##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52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 백승아·황정아·김문수

진선미 • 김한규 • 최기상

김영호 · 문정복 · 김동아

윤종군 • 박해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연구윤리지침을 수립하고,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학등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재검증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있어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부정행위 추가 검증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연구윤리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각 대학 연구윤리 실 태조사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분석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 와 연구윤리 관련 제도개선,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15조의2),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5조), 이를 통해 연구자나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를 "지원,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요건·절차 등에"로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④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5항에 따라 연구자나 대학등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연
	구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검
	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
	정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
	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
	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	<u>6</u>
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의
지원 및 제4항에 따른 대학	등 - <u>지원, 제4항에 따른 대학등의</u>
<u>의 조치에</u> 필요한 사항은 대 <sup>9</sup>	통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전문기
령령으로 정한다.	관 지정의 요건·절차 등에
<u>&lt;신 설&gt;</u>	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
	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
	구윤리지침의 운영, 제15조제4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 외)①(생략) <신설> 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대학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④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 실태조사에 필요 한 사항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지침으로 정한다.
-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 외) ① (현행과 같음)
  - ② 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5항 에 따라 연구자나 대학등의 연 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

② 교육부장관은 <u>제1항에</u>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을 제한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자 및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등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제한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외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
항에